

연구자료①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27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 성 평 우 회

2
가

002708

00

연구자료①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 성 평 우 회

이경득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연구자료①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 성 평 우 회

인 사 말

여성의 법적 지위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면 그 사회의 여성의 지위는 계속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을 억누르는 오래된 관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의 법률, 특히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있다. 이런 법률규정이 여성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케 하고, 여성을 남성의 예속물로서 살게 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기를 강요한다면 마땅히 그 법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 사회구조속에서 전통이라는 허울 아래 인간의 근본이 부정되고 여성의 인간화를 가로막는 어떠한 제약도 자유,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여성운동의 기본과제의 하나이며 한국여성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신행법제정 이전인 1953년부터 몇몇 여성지도자에 의해 가족법개정운동이 시작되어 1973년에는 여성단체들의 연합적 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77년 12월 일부 가족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핵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가족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럽을 비롯한 가족법 개정 반대측의 '가족법개정 - 그중에서도 호주제도폐

지, 동성동본금혼폐지 —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해서이다. 따라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이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이며 미풍양속이라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여성평우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산출의 하나로서 호주제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다룬 소논문들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가족법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와 가족법개정관계자료를 수집, 요약하였다.

본회가 가족법개정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족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여성이 차별을 받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가족법개정 하나로 여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성의 인간화 측면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족하나마 자료집을 펴냈다.

본회가 펴낸 자료집을 통해 그동안 잠잠했던 가족법개정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84. 3.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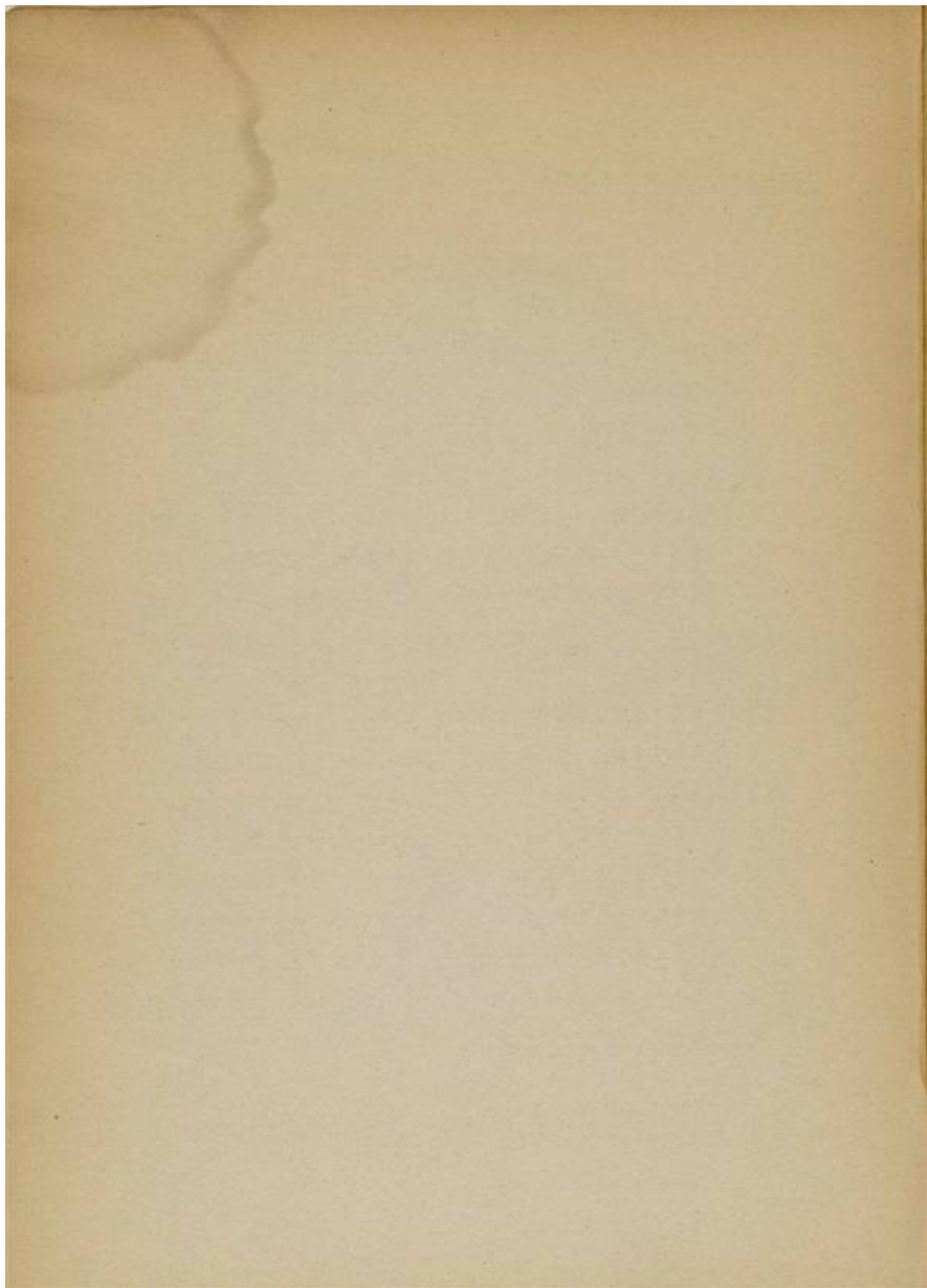
조 형

지 은 회

이 미 경

차 례

1. 개 관	1
1. 戶主制研究試論	4
1. 문제제기	5
2. 통일신라 촌적문서의 성격.....	7
3. 고려호적과 호의 성격.....	11
4. 조선호적제도상에 나타난 호의 성격변화	23
5. 대한제국 전후의 호적제도상에 나타난 호주의 성격	36
6. 맺음말	42
1. 가족법과 성차별 사례	43
1. 가족법개정관계자료요약.....	61
1. 가정법개정의 역사.....	61
2. 찬성측운동연혁	63
3. 개정반대측 활동연혁	66
4. 가족법개정 찬성측 입장	69
5. 가족법개정 반대측 입장	72
6. 개정된 가족법	80
7. 개정되지 않은 조항.....	82
8. 참고자료	94



개 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과 법적 제도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래의 인간절서인양 잘못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낡은 전통과 인습으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잔재가 여러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기존 가족제도의 고수와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은 봉건적 영역에서 탈피하지 못한 하나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구속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법적 차별과 인권유린은 억압받는 여성 지위의 반영인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여성들은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예속적 상태에 있으며 법률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피해받으며 제념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가족법의 성차별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여성운동에서 성취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물론 가족법의 성차별 조항을 다소 개정했다고 해서,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해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며 가족법개정운동이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여성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법개정이 있는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의식 내지 사회여건을 새로운 법제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서 여성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회구조 및 제반사항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여성운동이 가족법개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유리되어 있는 지도자적 일부 여성과 전체여성을 가족법개정운동으로 결집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적나라한 증거인 가족법이 현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성자신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밑에 깔린 현실적인 위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운동의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물리한 법적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질들여져 자신의 생활이 법과 무관하다는 무관심에 빠져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막강한 힘은 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가족법은 일반 국민의 현실생활과 너무 괴리되었거나 혹은 사문화된 제 방치된 만큼 이를 개선함으로써 고도화된 산업사회 환경을 뒷받침해야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민법개정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적 조치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무제한 법률체제를 형성한 것에서 탈피, 국민생활과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인 일관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족법이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임을 시인하여 매년초 시정방침때마다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당국이 개혁을 늦추는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보사부나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인구정책취지에

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인구팽창이라는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회풍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원칙하에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가족법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이루어진 후 인구억제정책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전체의 존엄성을 배제한 채 남아선호사상불식만을 고려한 개정일 때, 하나의 여성이 딸로 태어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생에서 오직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설움과 아픔의 고통도 큰데 법마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우대하고, 아내보다 남편을 존중하는 봉건적 위계질서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의를 파괴하는 인간과 인간의 차별, 상하지배복종관계는 온존하게 되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평우회는 여성의 인간화측면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가족법 개정에 도움이 될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1. 호주제연구시론: 가족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가 유림층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고유제도인가에 대한 역사적 타당성 여부를 밝힌 연구논문
1. 가족법과 성차별 사례: 가족법에 의해 피해 받은 사례 및 남녀차별이 극심한 가족법조항에 대한 간단한 해설
1. 가족법개정관계자료요약: 가족법개정운동측과 개정반대측의 운동역사 및 논점등의 소개.

戶主制研究試論

丁 璣 淑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에는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차별조항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불합리성을 철폐하고자 각계에서 운동을 벌여왔으나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족법에 대한 이론적 내지 역사적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요청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제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호주제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살핀 이 글은 가족법개정 반대측이 주장하는 미풍양속론의 허구성을 이론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가 다소 결여되었고, 특히 현행 가장권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부족한 것은 후일 보완할 것을 기약하며 이 글을 실는다.

필자 정경숙씨는 현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이화여대 강사로 나가고 있다.

■ 편집자주 ■

1. 문 제 제 기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한국 가족법은 중국의 종법제(宗法制)에서 연원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제도가 아니라는 견해가 학계에서는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대부분 유럽측에서는 '기자 이래,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왔으며, 또 그것이 우리 땅에 정착하여 온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문화이며, 미풍양속이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에 본고는 한 걸음 나아가서, 호주(戶主)는 「사원(辭源)」에 기재된 바대로 '일본의 명사'이며,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식민지 통치자들이 한국의 전통제도를 온존·강화·왜곡=이식한 제도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호주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면 달리 어떠한 용어가 쓰였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즉 현행 호주가 호(戶)의 주(主; 주인 혹은 주재자)라면, 과거의 호(戶)의 구성은 어떠한었으며 그 주(主)로서의 역할 및 용어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둘째, 과거의 제도와 현행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

리나라 제도에 영향을 끼친 이웃나라의 제도와는 무엇이인가.

세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의 전통제도를 강화·왜곡 혹은
이식시켰다면,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리고 호주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보완
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통일신라 촌적문서(村籍文書)의 성격

호주는 호(戶)를 전제한 개념이다. 호(戶)는 호구조사·호적제도의 기초단위이다. 호는 자연호와 국가의 경제상·군사상의 목적에 의해 편호(編戶)한 단위로서의 호의 두 개념이 있다. 그리고 현행 호주제에서의 호(戶)는 법제상의 호(戶)라 할 수 있겠다.

호구조사는 편호(編戶)를 위한 즉 국정자료를 위해 실시되었으므로, 자연戶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호적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자연호가 법제상의 호로 되고, 사회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호의 구성이 다소 복잡성을 띠게 되어갔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唐)에서는 삼년마다 호적을 개수(改修)하여 현·주·호부에 각각 한부씩 보관하였다. 당의 제도는 통일신라 이래로 한국의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통일신라의 촌적(村籍)은 3년마다 작성되었던 듯 하며, 고려와 조선은 3년마다 호적을 개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최고의 자료로서는, 8세기 중엽 내지 9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의 서원경(西原京)의 촌을 비롯한 4개 촌락의 촌적(村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신라장적(新羅帳籍) 혹은 일본의 동대사(東大寺)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되었기 때

문에 정창원문서라고 불리운다. 이 자료에는 3년간의 인구추이와 호의 수와 노비의 수 및 호구등제(戶九等制)에 입각한 듯한 자산 정도에 따른 호의 등급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지방통치와 수취(受取)를 목적으로 촌주(村主)와 그들을 보좌하는 식자계층의 손에 의해 직접 조사 작성되어 상부에 보고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단 하나 남아 있는 이 자료로 신라의 사회 구성의 전모를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자료로서 그 당시의 사회 기본단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첫째, 당시의 사회기본단위는 공연(孔烟)·연(烟)을 들 수 있다. 이것에 관하여는 각종의 이설들이 제기되고 있을 뿐 정설이 없으나, 연은 자연호로서 오늘날의 家=戶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연은 권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둘째, 연을 대표하는 사람과 그의 신분 및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다. 다만 남녀의 연령별 숫자 파악에만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烟=家를 대표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역역(力役)을 담당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닐 경우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은 명백하다.

셋째, 연=가가 행정상 기본단위로 인식되어져 있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연단위의 인구과락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백성에 대한 수취(受取)를 가가호호별로 부담시키지 못하고, 촌락단위로 부과시켰고, 그 행정적 책임은 재지적 세력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재지적 세력은 호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촌락사회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었을 것이므로, 인민에 대한 사적지배가 가능하다. 역으로 인민을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던 재지적 세력이 국가의 말단 행정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국가의 수취제도상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烟이 사회에 대하여 혹은 국가에 대하여 책임지거나 권리·의무를 담당하는 존재가 못되었으며, 이에 따라 烟의 대표를 법제상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네째, 연별인식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것은 신라 사회가 물품제적 대가족제 사회로서 족장중심사회이었기 때문인듯 하다. 따라서 족장을 중심으로 한 상위개념은 발달하였지만, 집안의 중추세력에서 멀어진 하위집단의 하나인 烟=家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 분화가 성숙된 것은 나말의 지방호족 세력의 대두와 함께 하위집단의 분화가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烟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성숙되어갔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이 문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구별이나 최소한의 혈연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호적의 전단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호적의 일종 혹은 호적을 전제로 하여 파악된 자료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호적은 신분, 호주, 부부, 그들의 선조, 가족 성원의 혈연관계 및 연령, 혼인관계, 그리고 노비와 고용인(雇工)이 명시된다. 따라서 이 자료는 단순한 촌락단위의 호구조사 총괄표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후대에는 호구와 호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보다 단순한 작업인 호구조사와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작업을 요하는 호적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호구조사가 발전하여 호적의 형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Ⅲ. 고려호적과 호의 성격

고려는 국초에서부터 호구법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빈약하여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戶口之法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며, 民에 대하여서는 戶口, 計口 등의 말을 사용하고, 양반에 대하여는 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우왕 14년(1388) 조준의 상소문에서 호적법이라는 말이 비로소 사용되었다. 그리고 공양왕 2년(1390) 도당의 계문에서 “옛 제도에 양반의 호구는 반드시 3년에 한번 성적하였으며...”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로 미루어 보아, 양반에 대하여는 3년에 한번씩 호적을 개수하였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성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호구법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는 확인되고 있는 바 없지만 최소한 가족성원의 명단 및 수효 등이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에 '가장'이 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허위신고할 경우 일정한 형벌을 가하였다(「고려사」 호혼조). 이로써 고려시대에 호의 법적인 대표자를 가장이라 불렀으며, 가장은 가족성원의 수효를 — 양반의 경우 호적을 — 신고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존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호적류로서 현존하는 것은 13세기 이후의 호구단자

문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驪州李氏小陵公派譜」의 4 전, 「光山金氏世系」의 2 전, 「咸昌金氏族譜」의 2 전, 「密陽朴氏漢城公派譜」의 3 전, 「安東金氏世譜」의 1 전 등 12 전의 호구단자가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글로도 알 수 있듯이 모두 派譜, 族譜 등에 전사(轉寫)된 것들로서 그 원형을 상실하였든지, 안동김씨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강 이북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호구단자라는 점에서, 자료의 신빙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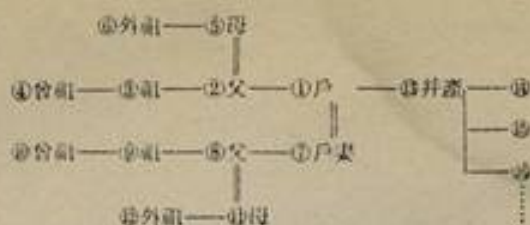
또한 덧붙여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양반의 것으로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적이 양반에 한하여 작성되었던 것임을 실증한다고 본다.

이상의 호구단자를 분석한 결과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호적은 현거주지에 가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가장은 호(戶), 가장의 처는 호처(戶妻)라고 기재하였다. 호가 사망할 경우 호의 상속은 연장자가 하였으며, 그 연장자가 전호의 처일 경우 처가 호를 상속하였다.

호적기재 양식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호구기재의 기본구조〉



즉 호와 호처의 사조(四組)를 기재하였다.

물론 호가 夫일 경우, 부계의 4조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호처의 4조를 기재하였다.

이것으로 부계(夫系)와 처계(妻系)가 똑같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여성이 호를 상속할 경우 그녀의 4조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 전호(즉 현호의 망부)의 4조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자손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남녀차별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여성이 호가 된다면 형제 간에 남녀차별이 없었던 것이, 재산상속과 제사권에 있어서 남녀평등원칙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 같다.

즉 호의 상속은 연장자가 하였지만, 재산상속은 태어난 순서나 남녀구별 없이 균분상속을 하였다. 이것과 관련된 관습으로서 제사 윤회(祭紀輪廻) 풍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호주권을 상속받은 자가 재산과 제사권을 단독상속하는 호주제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고려시대의 제도는 중국의 가부장제도와 매우 흡사하나, 시대에 따라 가족구성원 및 상속원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동거와 호적과 재산상속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호적은 거주지에 하였으므로, 동거인은 같은 호적에 올려지게 된다. 고려시대에 결혼한 여식은 서(婦)와 함께 처가에 서 일정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였다. 따라서 동거하는 동안은 호적에 올려졌으며, 이것이 조선중기까지 출가한 여식과 서(婦) 및 그 자손까지 족보에 올려지고, 사위도 호적에 올려지게 하였다. 따라서 여식 및 사위도 재산을 균분상속하였으며, 이것은 고려이래 조선중기까지 관행되어왔다.

특히 소유 노비의 경우 소전래(所傳來)를 호적상에 반드시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조변(祖邊), 부변(父邊), 모변(母邊), 처변(妻邊)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서 과거의 상속방향 뿐 아니라 미래의 상속방향도 결정하였다. 이로써 여성의 소유권 및 상속권이 인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상부(喪夫)하였을 때, 그 여성은 자신의 소생과 친정에서 받아온 노비를 데리고 친정의 거주지 및 호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재가할 경우 전부(前夫)의 소생을 후부(後夫)의 호적에 올려서 양육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바로 소생자녀의 양육권이

반드시 부계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모측의 권리도 아울러 인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父가 생존하고 있을 때 별적(분적)하지 못하였으며, 조(祖)의 생존시 손(孫)을 호적에 기재하지 못하였다. 조가 사망한 이후에 손이 호적에 오를 수 있었고, 비로소 조의 손들이 자신의父의 호적에 올랐다. 그리고 양자통속이 없었으므로, 아들이 없으면 그대로 폐가시키는 것이 상례였다.

이상의 사항은 가계승의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조손(祖孫)의 종적질서보다는, 戶의 연장자 계승이라든지 제사의 윤회제(輪廻制)등을 보아, 횡적질서를 우위에 두었으며, 재산을 균분하였으므로 호=호주의 권리도 강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가의 주인으로서의 호=호주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언급한다면 중국의 경우에도 가장을 호 혹은 당호(當戶)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가부장권이 강력하지 못한 사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말기에 이르러 호구법에 대한 개혁운동이 혁명파들에 의해 조선전국을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다. 다음 「고려사식화지 호구조 우왕 14년(1388) 8월의 판제 기사를 살펴보자.

대사헌 조준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이제 토지조사함에 있어, 경작하는 토지를 조사하여 경작하는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호의 상·중·하 3등을 정하고, 신분이 양인인지, 천인인지, 노비인지를 분간하여 호적을 만드소서” 하였다.

이상의 글을 미루어, 토지조사와 호구조사=호적작성이 병행하여 즉 동시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호등제(戶等制)는 토지소유면적 뿐 아니라 호=가의 장정의 수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혁명파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양반뿐 아니라 양인의 호적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호적의 일반화를 가져오게 하였던 듯하다.

다음 혁명파가 왜 호구법을 개혁하고자 하였는가를 대변하는 글을 살펴보자.

“근년이래로 호적법이 무너지서, 양반의 世系를 추심(推尋)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든다든지, 천인이 종량(從良; 천인이 양인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서 몇대로 양인이 되는 것) 하여서, 드디어는 (그 문제로)訟獄하기에 이르러 재판장이 가득하고, 관계문서가 분분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옛 제도에 따라서 호적이 없는 사람은 관리 임명장을 내어주지 말며 조정에 서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노비는 일체로 속공(屬公)케 하십시오.” 하고 도당(都堂)에서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받아들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공양왕 2년(1390)).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제가 무너지서 조정에 설 자격이 없는 자 - 호적이 없고 따라서 양반이 아닌 자 -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둘째, 당시 권력자들이 양인을 멋대로 천인으로 만들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따라서 양반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노비는 빼앗아서 판에 속하게 하여야 한다.

네째, 왕은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권력자들의 세력을 실추시킬 능력이 없었다.

즉 당시는 원나라 지배기를 통하여 종전의 신분제에 의하지 않고 출세한 일부 계층이 권문세족으로 신분상승한 이래, 고려의 신분제가 문란해 있었을 때였다. 이에 신분제를 안정시키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사유화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므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목적으로 호적제도 정비와 아울러서 토지조사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농장과 거기에 부속되어 살고 있는 佃戶와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구세력이 무단히 점유하고 있는 전호들중 민정들을 국가권력 휘하로 환원시킴으로써, 국가의 백성에 대한 지배를 일원화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고려 조

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성계 일파의 조선전국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귀정되었다.

호적의 정비 및 확대 실시는 이상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가 이른바 국보 131호 '이태조호적원본'이라 불리우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좌명공신(左命功臣) 이성계에게 하사한 노비명단(1목)과 이방원이 편제하고 있던 관청에서 고시한 호적기재상의 지침서(1목)와 나머지 6목의 이성계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듯한 30여호의 호적원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자료를 고려의 호적으로 보고, 고려 사회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는 조선전국 2년 전에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조선적인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성리학적 이념에 의해 호는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 의해 상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선 500여년 동안 선원전에 귀중하게 간직되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의 위정자들이 그 호적작성법을 조선의 모범적인 제도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이 자료에는 각 계층의 호적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 때에는 양반에 한하여 호적이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은 혁명파에 의한 호적 확대 실시의 결과이며, 따라서 조선적

그리고 외거노비(外居奴婢)의 경우, — 출거노비(率居奴婢)인 경우는 주인의 호적 끝에 기재되기 때문에 노비들로 구성된 호=가는 외거노비일 것으로 추측된다. — 그 호=호주가 여성인 예가 하나 있다.

戶奉川郡夫人申氏戶收資金年終給參同戶建德年終給上并產元文同戶收金連年伍拾肆歲
婦貞貞年伍拾九即

물론 이 경우도 소유주를 밝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노비호의 호=호주는 여성인 것이다. 또한 그 노비를 다른 여성 — 이한테 딸이나 손녀 — 에게 상속할 경우, 그들 노비의 호=가는 그 상속녀에게로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실례는 없지만, 이것은 호=호주가 여성에게서 다른 여성에게로 상속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가 된다고 본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사위가 동거할 경우에 사위의 호=호주는 장인이 된다. 만약 그 사위가 외거노비호를 소유할 경우, 그 노비의 호는 사위가 된다. 즉 사위는 장인의 가족이면서 노비호의 호=호주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추측은 앞서 언급된 寧川郡夫人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寧川郡夫人의 남편이 살아있을 경우, 寧川郡夫人의 호=호주는 그녀의 남편이 되지만, 그녀 소유의 노비의 호=호주는 그녀 자신이

된다.

이점이 오늘날의 호주와 고려말의 호=호주와를 명백하게 구별시키는 점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호주는 다른 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보 131 호의 경우 한 호의 구성원이 다른 호의 호=호주가 될 수도 있는, 즉 법적으로 이중적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호=가가 호삼등계 혹은 3정 1호계 등의 사회경제적 존재(編戶)로서의 성격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중적 신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보 131 호의 호적기재 양식은 혁명 주도세력인 성리학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으므로 남성 연장자가 호를 상속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조선초에서부터 시행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태조 2년(1393)에 작성된 해주최씨의 호구단자에 나타난 옥구군부인송씨가 여성으로서 호를 상속한 예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호가 옥구군부인송씨 본인을 칭할 때, '戶矣獨女옥구군부인송씨'라 하였다. 그리고 그녀와 관계된 사람을 단순히 부, 조, 증조, 외조부라고 하기도 하였지만, 남편쪽에 대해서는 '戶矣夫矣祖', '戶夫矣曾祖', '戶夫矣外祖妻父'라 하였고, 친정쪽에 대해서는 '戶女矣父', '戶女矣外祖'라고 칭하고 있는 점이다. 즉 여성이 호를 상속하였을 경우 호라고도 지칭하나 호녀

라고도 하였다는 점이다. 호녀의 '녀'가 호의 천정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할 경우 소유적인 '의'를 사용하였어야만 했다. 따라서 '戶女'는 여성인 호(즉 여자호주)의 뜻을 가진 명사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여성이 호를 상속하면 '女戶'라고 칭하였던 것을 보아서도 확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호를 상속하는 것이 조선초까지는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후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알려지는 바가 없다. 그러나 고려말 이후의 가족제도가 대략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호녀의 존재도 그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조선후적제도상에 나타난 호의 성격변화

조선은 성종대에 「경국대전」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최초의 성문법이 집대성된 것이다. 이 「경국대전」에 호구단자식과 준호구식이 명문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난을 전후한 시기까지 고려적인 기재방식이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국대전」의 규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은 임난이후의 일인 것으로 본다. 그 규식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年號幾年某月日
單子女孫 東。有年戶別列單子孫。女孫列於本
單以韓盧工某〃年幾某子支生
四祖列繼
妻某氏年幾某子支生續某
母某氏年幾某子支生續某
四祖列繼
第戶住具銜姓名年幾某子支生本某
第統
某部某坊某號戶口單子(外則稱某面某里)

〈戶口單子式〉

某年某月日某坊某號某戶口單子 東。有年戶別列單子孫。女孫列於本
妻某氏年幾某子支生續某
母某氏年幾某子支生續某
四祖列繼
第戶住具銜姓名年幾某子支生本某
第統
某部某坊某號戶口單子(外則稱某面某里)

〈舊戶口式〉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법적인격체로서의 '호'가 행정 조직상의 일부로 편제된 점이다. 한편으로 여전히 호적대장의 기록에는 고려시대의 기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호는 호구단자를 제출하고, 그리고 준호구를 발급받는 기본단위이면서 또 '제○호'라는 식의 행정 단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를 모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개국과 더불어 전왕조인 고려가 권문세족과 지방호족들에 의하여 사사로이 백성이 지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왕권이 약화되고 국력이 약화되었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개국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나아가서 양반들의 백성 지배의 길을 봉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일환이 호적제도의 완비와 호패법 실시 그리고 5호작통법(五戶作統法)이다.

그 과정에서 준호구 한 통을 작성하는 단위 즉 법제상의 호를 행정상의 기본단위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5호작통법은 5가작통법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호는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호=가의 개념을 조선 후기에 간행된 법전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① 매 삼년마다 호적을 고쳐서 호조·한성부·본도·본읍에 간직한다.

- ② 서울과 지방은 5호를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며, 5통마다 리정(里正)을 둔다. ...
- ③ 사대부와 서민은 한결같이 집이 많은 자리의 순서에 따라 통을 이룬다.
- ④ 모든 민호(民戶)는 이웃하여 사는 집끼리 가구수의 다과·재력의 빈부를 막론하고, 5가를 1통으로 삼고, 5가 중에 지위가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통수(統首)로 하여 통내의 일을 관장하게 한다.
- ⑤ 외부에서 이주해 온다든지, 외부로 이거하는 경우에는 원거주지의 관인과 신거주지의 관인이 공문서를 서로 대조해본 후에 머물러 살 것을 허락한다.
- ⑥ 입적하고도 호구등본을 갖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서 논죄한다.

이상으로 호와 가는 같은 뜻이며, 서로 구별없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앉은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수에 구애되지 않고 호=가들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의 호적제도상의 호=가는 자연호를 법제화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가작통법에 의해 실시된 호적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제와 흡사한 것이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다음 호=가의長の 역할과 용어를 살펴보자.

① 누정(漏丁)하였을 경우, 가장이 1구(口)를 누락시켰을 경우 매 100에 3년간 도형에 처하며, 3구(口)이상일 때에는 사족(士族)이면 무기징역에 처하고, 평민이면 군에 보내어 천역에 복무케 하며, 묵사천민인 경우에는 섬으로 유배한다.

② 사대부의 여자(딸)로서 호적에 누락되었을 경우 그 가장을 도배형에 처한다.

③ 독립한 호적으로 분립한 자를 자기의 가솔의 장정인 양 암록(暗錄)하여 부역(賦役)을 피하려고 하는 가장은 ... 모두 매 100 및 정대형에 처한다.

④ 나주 금성산 및 제산의 음사하는 곳에 사족의 부녀자가 올라가서 머물러 잘 경우,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장은 제서유위율로 논죄한다.

⑤ 혼인하는 집안은, ... 담당관의 여자를 막론하고 사치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일체로 금하며, (어겼을 경우) 가장은 제서유위율로 논죄한다.

이상의 글로 미루어 보아 호=가의 사회적·법적 책임자를 가장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에도 가장을 호라고 그대로 명기하기도 하였다.

가장의 역할 - 의무는 대략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호

구를 신고할 의무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이래의 가장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때에는 사대부의 경우 여자를 신고(入籍)하지 않았을 때 체벌을 가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전 시대와는 달리 여자를 호적에 등재할 필요가 적게 되었었던 시대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는 듯 하다. 이점은 다시 후술하기로 하겠다. 둘째는 적시에 자녀를 혼인시킬 의무가 있다. 특히 딸을 30세가 넘도록 혼인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었으며, 혼인할 때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되었다. 셋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국법을 어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하고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었다.

특히 장정의 수를 증감시켰을 경우, 가장 뿐 아니라 통수에서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행정담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세칙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호적제도가 국역을 담당할 장정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 이래의 경향으로써, 호적제 실시의 목적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호적이 남성 위주의 제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로써 호적제도는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한 것이지 미물양속의 유지와는 무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호적이 남성위주로 경직화됨에 따라 여자를 호적에 입

적시키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었던 듯 하다. 또한 조선 중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집차 여식에 대한 상속의 비중이 약화됨에 따라 여식을 구태여 호적에 입적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사대부가에서 여자를 입적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삼입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가족성원을 국가에 대하여 책임짓는 가장이라는 존재 이외에 주호(主戶)라는 존재가 눈에 띈다. 다음 주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 ① 누호(漏戶)시켰을 경우, 주호가 사족인 경우에는 종신 징배하고, 평민인 경우에는 군에 보내어 천역에 복무케 하고, 공사원민인 경우에는 섬으로 유배한다.
- ② 삼정(三丁)을 누락시킨 가정과 호를 누락시킨 주호와 5 호이상을 누락시킨 별문서·유사·통수·감고·리정과 籍이 누락된 당신이, 사족이면 기보병에 충정하고, 평민이면 조수군에 충정하고, 공사 원민이면 일차 업형을 가한 후 서북방면의 먼 지방으로 종신 징배한다.
- ③ 결부(結負)를 기만하여 은익시키는 폐단은 다분히 토호가에서 발생되는데, 그 '전가의 울'이 두려워서 의례히 노비를 경작자로 삼는다. 양전할 때에 주호가 그 정을 알고도 이를 기만하여 은익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호에 대하여는 조판(朝官)

을 막론하고 전가율(全家律)로써 처단한다.

- ④ 세의 부과, 결수를 지나치게 속이고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각 주호는 조관(朝官)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징계한다.

이상 주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 주호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호주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글을 보면, 주호는 가장이 장정을 신고할 의무를 가진데 대해서 호를 신고할 의무를 지니며, 아울러서 자신의 (혹은 타인의) 토지소유 상태를 신고할 의무도 지닌 신분의 사람인 듯하다. 또한 가장에 대하여는 모든 신분 계층의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호를 언급할 때에는 '조관을 막론하고(勿朝官...)'라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거나 토호라고 불리울 정도의 사람으로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를 전호에게 경작시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주호에 대하여 언급된 조선총독부중추원에서 간행한 「교주 대전 회통」의 주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주호: 호에는 주호와 솔호가 있는데, 솔호는 주호에 종속되며 따로 독립하면 별호로 된다.

위의 글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상정하기는 매

우 힘드나, 주호는 호 단위의 사람들을 사용하며, 법적으로 그들을 (즉 그들의 호를) 선고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실력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즉 토지를 매개로 하는) 예측관계이지, 신분상의 예측관계를 맺지는 않은 듯하다.

참고로 중국의 주호를 살펴 보자.

당시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이래 많은 법전이 발포되었지만, 「대명률」에 상당히 의존하였고, 호적사목에 대하여도 대명률의 주호율에 의거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주호와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중국의 주호에 대하여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주목되어지고 있으나, 많은 학설이 있을 뿐 학계의 정설은 아직 없다.

주호 : 객호에 대하는 말이며, 그 지방에 본래 살던 민호를 일컫는다.

객호 : 주호에 대하는 말이며, 다른 지방에 적을 두고 내부(來附)한 민호를 일컫는다.

중국의 객호는 앞서 본 촌호와 같은 개념인 듯하다. 현 학계에서는 한국의 주호에 관하여 주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호주는 아닌 것은 확실하며 '호 밖에서 호를 지배하는 세력'들 중의 하나인 듯하다.

주호 이외에도 법전과 법령집에는 일반 서민의 호를 지배하는

세력들로서 호강·품판·무단들의 예를 들고 있다.

이들은 민호와 민정을 호적에서 누락시켜 사사로이 부렸던 세력가들이다. 이 중에서 품판은 중앙의 관리이지만, 관리이기 이전에 정(丁)을 지배하는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호강과 무단은 재지적 세력이다.

앞서의 품판 역시 본래의 신분이 재지세력가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들은 행정조직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개인의 세력으로 백성을 부릴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다.

조선정부는 국초부터 사사로이 민을 지배하는 중간적 세력을 배제하고자 호적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대한제국시기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특히 이들이 숙종조 이후 법령집에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들 중간세력은 국가의 백성에 대한 일원적 지배에 방해될 뿐 아니라 국력을 반감시키는 존재이었다.

이상에서 오늘날의 호주와 비슷한 개념으로서의 호=가장을 살펴 보았다. 즉 호적상 가장은 호라고 표기되었고, 正史와 법전에서는 가장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라는 용어는 두군데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는 국보 131호 호적의 호적기재지침서중에 “同戶口內當身戶主矣祖上沙余良・同居

子息・同腹生男姪・女婿族派明分開坐”와 또 다른 하나는 「고려사」 식화지 공양왕 2년의 “各於戶籍內 戶主世系及同居子息・兄弟・姪婿之族派”이다. 앞의 것은 500 여년전에 씌어진 필사본으로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판독하는데, 아래의 「고려사」 해당조의 내용을 참작하여 복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호주라는 용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주세계’를 호의 主世系로 읽는 것이, 호와 호처의 4조를 밝혔던 당시의 호적기재 양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호○○조상’의 빈칸을 어떻게 판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앞으로 연구해볼만한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태종 14년 4월과 15년 12월의 호구법과 호구식에 관한 기사중에 “戶首人夫妻內外四祖”라는 구절이 자주 보인다.

호=호주를 호수(戶首)라고 하였던 듯하다. 그렇다면 러말선초에 호수 내지 호수라는 말이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이라는 말은 흔히 쓰여지고 있는데 반해(필자가 과묵한 탓으로) 호수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찾기 매우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호수라는 말 역시 널리 쓰이지 못하였던 듯하다.

1920년 조선총독부편 「조선어사전」에 호수의 개념을 “전(田)8결 마다에 한 사람의 대표자를 정해서 조세를 징수해서 상납하는 자”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호적 맨 처음에 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쓰인 호수 역시 후대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진 듯하다. 또한 앞에서 정의한 대로 호수라면 이들 역시 각 호를 지배하는 중간세력=행정외적세력으로 성장하였던 듯 하다.

그렇다면 조선의 호의 대표자는 '호=가장'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가장 옳을 듯하다. 그러나 현행 호주는 일본식의 명사이고, 호는 중국식의 명사이었다. 대략 호주와 호는 가장이 누리는 권리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개념을 규정짓기 위하여는 일본과 중국의 가족제도상의 특징 및 가장의 권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가 크고, 또 일본과 중국 모두 시대에 따라 그 가장의 권리가 다르리라 보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편의상 최재석 선생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국의 경우, 재산을 균분상속하기 때문에 가장(호 혹은 당호)의 권위가 동양 삼국중 가장 약하며, 부모라도 자손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자손의 부모에 대한 예속도도 가장 낮다. 가장권은 연장자 상속이므로 그 가족형태는 방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사권 역시 유회제 내지 비용균분제이다.

일본의 경우, 호주는 가의 계승자로서 가의 전통적 권위를 대표하며, 가산을 강력히 장악함으로써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원을

통제한다. 그리고 호주권 계승자가 제사권과 재산권도 함께 동시에 계승한다.

한편 호주는 생전에 그 지위를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은거할 수 있는 은거제가 있다. 조선의 경우, 국초에는 중국과 거의 흡사한 제도이었으며 가장의 권한 역시 비슷하였지만 18세기 이후 성리학의 영향으로 가부장권이 확대되어 갑에 따라 일본과 비슷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형태인 것으로 변해갔다.

즉 조선의 경우, 임난까지는 고려시대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으나 17세기 이후 양자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19세기에는 과거합격자의 15%가 양자일만큼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입양신고를 망자의父가 결정하지 않고 망부의 처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말에는 망부의 처에게 결정권이 없고, 망자의 부가 결정하였다. 17세기 중엽이전까지는 대체로 재산균분상속이었으며, 제사는 장자단독봉사와 자녀유회봉사 두 가지의 양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18세기초부터 장자단독봉사의 경향으로 기울었으며, 18세기 중엽부터 재산은 장자우대·남녀차별 상속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물론 임난이후 호=호주는 장남에게로 상속되었다. 또한 18세기 경부터 가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령이 많아져갔다. 이러한 제반 변화는 가족내에서 호=호주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어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호=호주의 권리와 의무가 많아져갔으므로 일본류의 호주의 개념과 비슷해져갔을 것으로 보이나, 호에 대한 법제상의 변화는 「대전회통」(1864) 간행시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헌이나 관행을 조사해보면 일본류의 호주의 개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 즉 식민지와 단계에서 호주제 이식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식민본국이 식민지에 본래 전혀 없었던 것을 강제로라도 식민본국의 제도를 이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이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의 봉건적 제도 안에 호주라는 맹아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온존시킨 것은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장차 그들의 제도를 (즉 일본 민법을) 직접 식민지에 적용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V. 대한제국 전후의 호적제도상에 나타난 호주의 성격

호주가 법제상 처음 나타난 것은 건양원년(1896)에 제정된 호적양식에서이다. 그것의 의의는 당시의 정권의 성격과 아울러서 규명되어져야 하겠지만,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일본제도의 도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 이후 건양 원년의 제도를 보완하여서 1909년 3월 내부 훈령 제 39 호 “민적법집행심득”에 의해서 비로소 호주제가 시행되었다.

그 신고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民籍簿〉

甲種(一)

何部(附)

何部(附)

何部(附)

何部

何部(附)

何部(附)

(用紙別圖)

(甲種(二))

本 籍 地 區 別 別 姓 別 戶 別	本 籍 地 區 別 別 姓 別 戶 別	本 (附生主)				
		戶主(附生主) 年 月 日				
		父		出生別		
事 由	主	姓 名				
		生年 月 日				
事 由	次	父		出生別		本
		母				
		姓 名				
事 由	次	生年 月 日				
		父		出生別		本
		母				
事 由	次	姓 名				
		生年 月 日				
事 由	次	父		出生別		本
		母				
		姓 名				
事 由	次	生年 月 日				
		父		出生別		本
		母				
事 由	次	姓 名				
		生年 月 日				

이 양식은 앞서본 「경국대전」의 양식과 판이하게 다르다. 「경국대전」의 양식은 19세기 말까지 답습되어 왔다. 그 사회에 근대법이라는 미명하에 호주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 표면적인 변화는 첫째 호 대신 호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관행상 호주라는 말이 사용되어왔을런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그들이 제시한 것은 일본식의 호주제인 것이다. 둘째, 호와 호처의 4조를 기재하여 왔던 것을, 호주제에서는 단지 전호와 호주의 부모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전통성의 말살과도 일련의 관계가 있을 듯하다. 세째, 4조를 병기(並記)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호와 호처의 지위는 비슷하였었는데, 호주제에서 처는 그의 소생과 같은 위치로 하락되었다.

민적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점은 통감부가 관계사무를 경찰서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선조에서는 면-리-통제의 행정단위로 조사하여 호조에서 총판하였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업무를 탁지부(度支部)에서 판장하였어야만 했다. 그러나 통감부는 민적부를 경찰서·경찰분서·순사주재소에 비치시켰다. 그리고 면장은 구두신고를 받아 기재해준다면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소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면장은 민적 이동사항을 예의주시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로써 면장 또한 일제의 앞잡이인 경찰의 수족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음 통감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민적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첫째,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둔 통감부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당면과제였다. 특히 식민지 백성을 봉건적인 구체제 질서에 의하여 지배하기 보다는, 새로운 식민지 체계 하에 귀속시키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응한 것이 강력한 헌병-경찰제에 의한 통치 방안이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적을 경찰 휘하에 이관시킴으로써 경찰력에 의해 식민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둘째, 이로써 경찰이 식민지민에 대하여 인구과악·동태과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식민지민의 행동·사상을 통제하고, 경제적 착취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셋째, 경찰력에 의하여 민적을 실시하였으므로, 전통사회에서 호를 신고할 의무와 기타의 권리를 지녔던 주호·호수·품관·호강·무단 등 '호 밖에서 호를 지배하던 세력'이 민적실시 및 신고에 개입할 기회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면-리-통의 행정단위와, 주호등의 중간적 존재 등의 이원체제이었으므로, 각호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 중간적 세력들이 포탈하는 인적·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았다. 경찰력에 의해 이

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식민지 통치자들은 일원적으로 효과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통감부가 민적법을 실시하게 된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민적법에 의해 개편된 호주제는 그 식민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실시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제도개편을 할 때 통감부와 총독부는 조선의 법전·법령 및 관습법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조사·연구하여 근대법을 실시하였지만,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고 효과적인 측면을 강조시키고자 부심하였다. 이로써 이식·강화·왜곡의 과정을 밟게 된 호주제는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봉건성과 형식상의 근대성이 복합된 것이었다. 다음 식민지 호주제를 살펴보자.

첫째, 식민지 호주제에 입각한 호주권은 전통사회에서의 호=호주보다 강력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를 지배하던 주호 등의 세력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호주는 직접 식민지 권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식민지 호주제는 일본의 호주제를 이식한 것이다. 일본의 호주권은 조선 전통의 호=호주권보다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구속력이 강한 것이었다.

식민지권력은 사상·행동 통제를 위하여 이식된 호주제에 입각한

호주에 대하여 그 통제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강제하게 되었다. 물론 18세기 이후 조선의 가부장권이 점차 강화 추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식민지 권력은 그러한 추세를 보다 더 강화시켜, 그들의 통치·착취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행정력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세째, 이상과 같은 식민지 민적법을 시행함으로써 전통제도의 봉건성을 온존·강화시켜가던 식민지 권력은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민법을 직접 식민지 조선에 적용시킴으로써 점차 조선의 제도를 왜곡시켜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제는 일제에 의해 식민지 착취를 위하여 온존·강화·왜곡·이식의 과정을 밟은 식민지 호주제의 유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호주제는 전통의 제도인 것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

물론 민적법에 의한 식민지 호주제 하의 호수권은 현행 호주제 하의 호수권과는 매우 다르다. 일제 치하에서도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해방이후에도 가족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호주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군사적·행정적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그 제도 하에서 호=호주는 어느정도 주체적 역할을 하였지만, 현행 호주제는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바가 없다.

이렇다면 가족의 혼인과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호주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의 가족에 대한 구속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혹은 세대주인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그것 역시 호주가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호주권의 상속도 무의미해졌다. 부모 생존시에도 차남 이하는 분가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호주가 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호주권은 실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호주제는 호적상의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또한 호주제가 전통적인 제도가 아닌 바에는 미풍양속과 호주제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는 법제상 가족성원을 신분적으로 종속시키므로 신분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호적제도가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양반·상민·노비등)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발생하였던 데에서 연원한다. 그리고 일제가 형식상으로 근대법을 도입시키고 봉건성을 온존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분제는 배제시켰으나, 가족내의 신분제는 그대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현행 가족법이 형식은 근대법이면서 내용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한편 봉건적-식민지적 신분제를 온존시켰기 때문에 헌법내에 위헌적 요소가 병존하게 된 모순을 노정시키게 하였다.

Ⅵ. 맺 음 말

이상에서 한국의 호=호주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성격을 개관하고, 그것이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식·강화·왜곡된 것이 이른바 '호주제'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보다 치밀하게 자료수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순되고 비약이 심하게 서술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호수·주호에 관한 문제는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지면 전통사회의 구조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듯하다. 이 주호를 호주로 파악한 종전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호주가 법제상의 개념으로 부각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호주라는 말은 다소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에 대한 파악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 본고의 각 장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 뿐 아니라 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가족법과 성차별 사례

1953년부터 시작된 가족법개정운동은 20년이 지난 1973년 여성단체들의 연합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1977년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법에는 남녀차별조항이 남아있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한국인들 중 75.47%가 민법중 가족법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점이다. ("한국인의 가족법의식"에 관한 김주수교수의 연구조사(1973)) 이와 같이 여성들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가족법 보호 규정마저 알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 자신의 의식부족과 함께 가족법의 홍보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음은 가족법-특히 남녀차별이 극심한 부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개인적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법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남제혈통을 위한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례①) 강○○여인은 3남3녀의 첫딸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목포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남편의 월급에서 남은 돈을 토크로 모아 내집 마련의 꿈도 실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강여인은 딸만 셋을 두었는데 세째 아이를 낳고나서는 죄인처럼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또

임신을 하였는데 밤마다 온몸이 추시는 고통을 겪었지만 '다음에도 딸이 아닐까' 하는 정신적 압박감이 더 커로왔다. 하나님의 은총인지, 시어머니가 세째에게 지워준 차남(다음에는 남동생을 보라고 지워준 이름)이라는 이름 덕택인지 다행히도 아들을 분만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아들 덕분에 좋아졌고 남편의 귀가시간도 빨라졌다. 온 가정을 화평하게 해 준 아들이 6살 되던 해 집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너무나도 시름에 잠긴 강여인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남편도 위로를 하고, 시어머니도 손자에 대한 환상때문인지 아무말이 없으셨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다시 "딸만으로는 대가 끊기고 그렇게 되면 허씨 문중은 폐가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다른 여자에게서라도 아들을 봐야한다며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도 차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있는 아들도 못살핀 주제에 입달렸다고 말한다"며 손찌검까지 시작되었다. 남편의 외도가 더욱 심해져서 이질을 막는 것은 아들 낳는 길 뿐이라는 생각에 39살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여자 나이가 너무 많아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낳은 자식은 다행히도 아들이었다. 그러나 난산때문인지 3살때까지 잘 걷지도 못하고 5살때에도 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병원에 갔더니 정상아가 아니라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병원의 진단결과가 나온지 6개월후 강여인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5개월된 사내아이를 입양기관에서

태려와 호적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친손주가 넷이나 되는데도 왜 그렇게 태를 이어줄 아들을 밝히는지 강여인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었다. 강여인은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 정상아가 아니어서 태를 이을수 없다는 판단을 혼자서 내린 시어머니의 처사가 서럽기만 했고 더우기 막내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또 친자식이 태를 잊지 못하는 절망감을 덜고 새아이한테 잘할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설령 강여인이 새아이를 친자식처럼 배려한다 할지라도 46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누가 믿을지도 모를일이어서 심란하기만 했다. 더욱 아속한 것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눈치인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태도라고 한다.

(사례②) 김○○씨(남:35세)는 김해김씨 종가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대학 졸업후 곧바로 취직하여 지금은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씨의 형은 어려서 이름을 알수 없는 병을 앓고나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 반반한 집 한칸도 장만하지 못하여 홀로 계신 아버지를 김씨가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와지자 호주상속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문중어른들은 착실한 둘째 아들인 김씨에게 호주상속을 시켜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김씨의 형도 호주상속을 포기하여 형 대신에 호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에 김씨가 면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더니 본인이 하고 싶진 안하고 싶건간에 말아들이 상속받아야한

다고 집수를 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년이 지나도록 호주상속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김씨가족의 호주는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있는 형편이었다.

(사례③) 박○○할머니는 딸만 셋을 낳았으나 남편은 딸셋으로 충분하다며 가정에 충실하였다. 박할머니네 부부는 딸셋을 모두 시집보내고 막내딸 내외와 같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4년전 3형제의 장남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다. 시골에 있는 선산과 선산주위의 밭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이미 딸들에게 다 분배가 되었고 호주상속은 박할머니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골에 살고있던 시동생이 올라와서 형님이 안계시니 제사를 자신들이 지내야한다면서 제사지낼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또 제사지내러 시골 동생집에 내려갈 때마다 대가 끊기니 집안에서 양자를 들여야한다며 자기 자식을 양자로 들이라는 것이었다. 시동생 아들들은 모두 짝이 좋지 않아 동네부랑배들과 어울리거나 전과범들이어서 박할머니로서는 도저히 이조카들을 양자들일 마음이 없었다. 한편 막내시동생 아들들이 착하기는 하지만 그 조카들을 양자로 데려오면 첫째 시동생 쪽에서 더욱 행패가 심해질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박할머니의 응답이 없자 첫째 시동생이 또 서울로 올라와서 "사후양자제도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형수님 돌아가시면 종친회에서 제 자식을 양자로 들일 수 있다"며 "살아생전에 양자로 맞아들이라"고 협박을 하다시피 하였다. 선산의 땅

소유권한이 호주에게 있기때문에 시동생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생각하니 께뻘하기도 했고 아들없는 설움을 겪은 말년에 박할머니
혼자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먼저 간 할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다.

앞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호주제도는 호주가 그 가족을 통솔
하여야 한다는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토지를 중심으로 친족이 같은 공동체에 살았던 봉건적 경제체제아
래서나 가능한 것이며, 법정분가제도의 실시로 인해 현행 호주제는
세대주와 동일한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호주는 호적
의 맨앞에 기재되는데 불과한 관념상의 규범으로 있을 뿐이다. 그
러나 민법에 따르면 맏아들이 호주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며 이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다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딸에
게 예외적으로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호주가 된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호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사실상의 우리 가족제도와 법률상의 가족간
에 큰 간격이 있게 된다. 호주권은 실제로 공허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만 장남이 차남의 1.5 배의 몫을 상속받을
뿐이다. 또 이 호주상속제도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채질하게 된다.
가(家)를 잇는 것은 아들뿐이라는 생각에서 남자아이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아들을 낳기 위해 사례①에서 나타난대로 원치 않는
아이를 여럿 두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오거

나, 더 심하게는 아들남은 여자에게 본처가 밀려나 이혼당하는 경우로 끝난다. 이는 남자를 중요시하는 가부장제의 하나의 소산인 호주제도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성동본혼은 근친혼과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성동본혼이 곧 근친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양자는 그 개념이 다르다.

민법 제 809 조에 의하면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 2 항에서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 항이 동성동본금혼 규정이고 제 2 항이 근친금혼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의 경우 첫째, 동성동본불혼제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즉 현재의 의학적 입증에 의하면 근친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한 동성동본자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현행 규정에 따라서 父系혈족인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우생학적으로 유해하다고 한다면 이는 母系혈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이 모계혈족에 관해서는 4촌까지 밖에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지나치게 부계혈통만을 중요시하는 남녀불평등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광범위하게 금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혼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동성동본불혼제도가 우리 고유의 풍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신라시대에는 계급적 내혼제와 같은 신분계급끼리만 혼인하는 제도가 성행하였고 고려시대에도 계급적 내혼제와 동성간의 혼인 및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조 중국의 大明律 규정에 의하여 동성혼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이 아니며 한낱 중국고대사회의 소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넷째, 동성동본불혼제도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姓의 기원 자체에 이르기까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姓은 원래 중국에서 전래한 것이며 특히 서민층에 있어서는 조선조 중기까지 姓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6.25사변 후 고아원에서는 고아나 기아에게 金·李·朴 등 혼한 성이나 본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이미 폐지된지 오래인데 이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점에서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동성동본혼과 근친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무만 있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어머니의 친권행사

(사례 ①) 서○○여인은 5년전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에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은 아이들 3남매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었으나 남편이 밖에 나가 여자와 관계를 갖으며 또한 재산까지 다 없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등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런 약점을 아는 남편은 이혼을 하되 아이들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서여인이 위자료나 양육비도 필요없고 앞으로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려다주지 않겠다는 작서를 쓰자 그제야 남편은 서슴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후 서여인은 간호원을 하면서 세 자녀를 혼자 키워나갔다. 그 1년후 친정어머니의 주선으로 미국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이민수속을 밟으려 하니 전 남편의 동의를 필요했다. 그러나 평소 아이들을 한번도 찾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없던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미국에는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례 ②) 전북 황등에서 살고 있는 정○○여인은 22살때 세살 위의 남편과 결혼했다. 처음 결혼 당시에는 정말 가난했었다. 두마지기의 땅을 받아 분가해 나와서 소작을 지어 살림을 꾸려 나갔다. 남편과 같이 농사지으며 시간이 남는대로 이곳에 품앗이하고

돼지 등을 기르는등 전혀 쉬지 않고 일을 한 보람이 있어 10년
이 지났을 때는 12마지기 정도의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결혼 1년만에
임신하여 딸 하나를 낳은 후로는 3번 임신에 3번 다 자연유산
이 되더니 결국 더 이상 아이가 없었다. 그동안은 살기가 어려워
자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남편도 조금 살림이 쪼들기 시작
하자 점차 아들을 갖고 싶은 눈치가 역력하였다. 결국 정여인은
결심을 하고 딸 여자를 보아 아들을 낳아 오라고 말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읍내 술집에서 20살난 여자를 읍에 사는 시고모
집에 데려다 놓았다. 그 여자는 곧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정여인은 처음에 아이만 데려오고 여자는 떠나 보내는 것으로 생각
했으나 남편과 시누이가 합세하여 아들 하나로는 안된다며 계속 그
여자를 시고모의 집에 살게 했다. 그 여자는 2년 뒤 다시 아들
을 낳았고 그 이후 부터 남편은 전혀 정여인과 딸을 돌보지 않
고 두 아들과 첩이 된 그 여인과 생활을 계속하더니 결국에는 정여인
에게 이혼을 강요하였다.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
림받은 정여인을 불쌍히 여긴 친정 어머니께서 정여인과 딸의 공
동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었다. 정여인은 집을 지니고 사는 것보
다 딸의 장래와 자신의 장래를 위해 그 집을 처분하여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집을 팔려니까 딸의 친권자인 옛 남편의 동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여인은 그동안 장만한 재산도 모두 첩
에게 넘겨주고 아들 못낳아 이혼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친정에서 마

런해 준 집까지 동의를 해 주어야 할 수가 있으며 남편은 집값의 반을 주어야 동의해 준다고 하니 말과 함께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고 있다.

민법은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가 친가에 목적이거나 재혼한 때에는 그 어머니는 이전에 혼인한 동안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라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은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어머니가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이혼한 여자의 친권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민법은 현실성을 결여한 전통적인 가부장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부모평등의 원칙에서나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견지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하겠다.

여기서 문제되는 친권이란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기르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상 친권의 효력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신분에 관한 것은 자녀의 주거지정권, 징계권, 영업허락권, 자녀의 인도청구권 등이다. 재산에 관한 것은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법정대리권 및 동의권 등이다.

친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직접 기르고 있는데도 이혼하여 호적을 달리 한다는 이유로 친권행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자신의 호적에 아이들을 입적시킬 수도 없으며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만 올릴 수 있을 뿐이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현실이 무시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차단시키는 등 어머니는 의무를 다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내의 공을 전혀 고려치않는 부부재산제도

여성을 진정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

현행 민법상 위자료청구권은 과실책임인데 비해 재산분할청구권은 무과실책임이다. 현행 민법은 위자료청구권만 인정하고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예를 들어 부정행위 혹은 악의의 유기, 구타, 주벽 등 법정이혼사유)이 있어야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다음에서 소개하는 양여인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노력하여 모은 재산이 있다하여도 배우자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혼때에는 자신의 몫만큼 분할하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정당하게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돌려받지 못하고 다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의 대가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은 남편이 밖에서 활동하여 생활비용을 벌어들이고 아내가 안에서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은 모두 남편의 소유에 속하고, 아내의 협력이 직접적으로 재산의 귀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내의 가사노동이 있음으로 해서 남편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것이고, 남편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은 남편만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고 부부의 복합된 노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든가 결혼후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하여야 한다. 1978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민법이 개정되어 아내의 내조를 어느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속이 분명치 않은 재산이란 결국 動産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이혼배우자의 생활보장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한 오히려 부작용과 가정을 파괴하는데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즉 TV, 냉장고 하나 사들여놓아도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일일이 밝혀놓아야 한다는 촌극에서 부터 不動産등기를 할 때마다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하느냐를 놓고 현재 사이좋은 부부사이에서도 묘한 갈등을 나타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농사를 직접 지어 재산증식에 일익을 담당하는 농촌여성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혼한 다음 아내가 죽거나 재혼할 때까지 남편이 그 생활비를 대주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지불하도록 하는 미국의

Alimony (이혼부양료) 제도, 이혼하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일본의 재산분여청구제도 등을 살펴봐도 재산은 부부의 복합노동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헤어질 경우에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여진다.

(사례) 양○○여인은 중농가의 6남매중 셋째로 태어났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양품점을 경영하는 언니를 따라 18살때 서울로 올라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다. 20살에 기술공인 남편과 만나 23살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후 언니가 사는 이웃에 전세방을 얻어 어렵게 살았지만 한푼 한푼 저축을 하여 조그만 집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젊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면 4년전 사우디로 떠났다. 양여인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양품점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잘 운영이 되어 그 수입으로 8살된 아들과 생활을 하고도 저축이 되었다. 남편에게서 오는 월급과 양여인이 벌은 돈이 꽤 모이지자 복덕방 소개로 땅을 샀다. 그런데 사둔 땅이 그만 그린벨트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고 다시 팔 수도 없게 되었다. 남편이 사우디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서부터는 부부싸움이 잦아져 둘의 사이는 냉기가 돌게 되었다. 그후로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친구들 보기도 창피스러웠지만 경제력이 있는 양여인으로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남편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6분의 1을 주

겠다고 한다. 재산증식의 일익을 담당했던 양여인은 부동산명의를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소에 남편자랑을 많이하여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샀던 양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도저히 알릴 수 없어 그 사실을 묵인한채 마음속으로만 꿈꿨다. 오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할 수도 없고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의 댓가만을 청구해야 함을 알고서 양여인은 법이 너무 여자에게 불리하고 억울하다고 울먹었다.

불합리한 적모서자관계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난 아이는 아내의 동의없이도 그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본처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는 적모서자관계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아내의 남편의 핏줄을 잇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입적시키려면 남편의 동의와 남편 집의 호주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부자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부다처제도 상관이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법례다. 본처와 서자사이, 후처와 전처의 자녀간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할때에만 혈족관계를 맺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상속법의 개정조향도 남녀의 부당한 차별을 거의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재산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다. 즉 장남(호주상속자)은 1.5, 차남과 출가하지 않은 딸은 1, 출가한 딸은 0.25, 아내는 장남과 같이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아내와 출가전의 딸의 상속분은 많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없이 아내가 사망했을 때에는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 그러나 사례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이 자녀없이 사망했을 때에는 아내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는데 이때 아내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몫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사례①) 안○○여인은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양장점 점원생활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 10년후에는 시내에 큰 양장점을 차릴 수가 있었다. 시집을 잘 생각도 않고 남동생을 대학까지 가르쳤다. 그리고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께 집 한 채도 사드렸다. 32살이 되었을 때 양장점을 남동생에게 맡기고 절

혼을 하였다. 결혼한 지 2년만에 딸을 하나 낳고 남편이 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 충격으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동생내키는 재산상속문제를 들고 나왔다.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거의 다 장남인 남동생에게로 가고 양장점마저 남동생 명의로 해놔서 출가한 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200만원이 고작이었다. 전체 재산은 2200만원 상당인데………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모은 재산인데 출가한 딸이라고 그 정도밖에 못받다니 억울할 뿐이었다.

(사례②) 나○○여인은 6.25전쟁중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같이 자랐다. 8살이 되어 학교 잘 나이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자가 배워야 소용없고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면 된다”하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맥장사나 간빈집을 지키다 13살에 서울로 상경하여 남의집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중 주인집 수리를 하러 온 무일푼의 남편을 만나서 20살에 결혼하였다. 결혼후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나여인은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여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 점포맡긴 집도 참만하고 식물가게도 친정어머니와 함께 운영하여 살만 해지자 아이가 없는 것만이 이 부부의 걱정이었다. 나여인은 자신에게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하여 남편몰래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나여인에게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여인은 남편이 진단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면 부부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실을 비밀에 불

이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식량배달을 나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그동안 그들이 고생하면서 살 때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시숙과 시동생을 대동한 시부모들이 들이닥쳐서 나여인의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딸 살림하는데 고생한 친정어머니에게는 상속이 안되는 반면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시부모에게는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나여인의 설움은 더욱 크기만 했다.

(사례③) 김○○할머니(61)는 2년전에 남편과 사별했다. 3남2녀의 자식중 큰아들은 대학까지 나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밑의 아들들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역시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딸들은 중학까지 시켰으며 3남2녀를 모두 결혼시켰다. 농촌에서는 그런대로 자식들을 공부시켜 다 제 방벌이를 하게했고 농사꾼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지간히는 했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식들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할머니와 죽은 남편의 고생이란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 결혼할 때는 10마지기과 밭 100경으로 시작한 살림이었으니 자식들 뒷바라지가 쉽지 않았다. 뜨거운 별아래서 아이를 업고 일하고 닭이니, 소, 돼지도 받아키우고 쫓일도 나가며 모은 덕분에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고도 땅을 더사논이 열댓마지기는 되었다.

막내아들이 군대간 후로는 부부만 남아 농사를 지었는데 2년전

남편이 죽고 두어달 후에 자식들이 내려와 재산상속을 한다면서 논밭과 집을 모두 처분해버렸다. 법에 정해진대로 한다면서 저희들끼리 몫을 나눠 가져가고 할머니 앞으로는 논3마지기 몫인가 밖에 차례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겠다면서 땅문서를 보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큰아들집에서 다섯달을 못넘기고 나와야 했다. 우선 며느리와 뜻이 맞지 않아 더이상 견디기가 피차 힘 들었다. 둘째, 셋째 아들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금은 첫째딸네 집에서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상속이 가장 적었던 딸네집에 살게되니 사위눈치만 보이고 세상이 야속하기만 했다.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지는 몰라도 재산을 모은 아내와 재산 늘리는데 기여한 바 없는 장남의 몫이 같은지 서글프고 할아버지도 없는 이 세상이 외롭기만 했다.

앞의 사례에서 여성이 법적으로 얼마나 열등한 지위에 있는가가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핀 것 외에도 가족법에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이 있다.(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 양자제도상의 문제점 등) 또한 16년간 동거했어도 여자가 남자보다 10년 연상인데다가 장성한 자녀들 둘 두번의 혼인경력이 형평, 사회정의, 미풍양속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혼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린 사실(1978.12. 2 중앙일보)이 있는 등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법으로 인해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다.

가족법개정의 역사

우리나라 헌법은 근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이래 유교의 기본사상인 남존여비사상의 유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이다. 이 친족상속편이야말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부터 시행되어 온 가족법(민법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은 제정당시 부터 현대의 민주주의적 사상인 인간평등의 사상에 위배된 남녀 차별대우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면서도 내용면에서는 19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가부장제 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여성들은 많은 피해를 받아온 바 있다. 그간의 정점은 주로 고래의 습관을 정리하여 입법하자는 전통주의 사상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창설이라는 민주주의사상간의 대결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여기에 절충주의적 시기상조론이 가담했다. 이러한 두 사상이 교차되는 와중에서 확연한 가치관의 정비작업도 없이 전개된 입법논쟁은 결국 전통성향으로 기울기 마련이었다. 특히 입법의원들에게는 입법학에 대한 사상사적 의의나 법의 선도적 기능 혹은 민족이상의 실천적 기구로서의 입법행위의 법정책적 배려를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속기록에 의하면 「동성혼을 반대하면 소위 젊은층의 청년남녀들은 저자식 캐캐묵은 자식, 머리

가 완고, 아주 그냥 “세멘트 콘크리트”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투표가 떨어질 모양이니 이것 감히 말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동성혼을 찬성하면 적어도 40대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그놈 죽일놈이지, 금수와 같은놈, 그놈 패륜역적같은 놈이라고 할 모양이니 이것 말 못할것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 가부간 꿀먹은 병어리 모양으로 입을 열수 없다……」 (국회회의 속기록 제 30호, pp.21-23.)고 한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차기의 선거전에만 신경을 썼었던 듯하다. 당시 농촌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년층이 가족공동체의 정치적외사(투표)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년층이 주장하는 전통성에 편중한 입법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1973년 6월, 61개 여성단체의 연합으로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이하 추진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가족법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①호주제도의 폐지 ②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③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④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공유추정 ⑤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⑥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⑦부모의 친권공동행사 ⑧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⑨상속제도의 합리화 ⑩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10개 항목을 개정안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가족법 344개 조문 중 81개 조문에 걸친 개정작업이었고 신설규정만 해도 부칙을 포함한 19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다. 이 개정항목은 1974년 7월 개정안으로 완성, 국회제출을 위해 여성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며 축진회장인 리숙종위원이 단독으로 호주제도폐지, 동성동본불혼제도폐지 등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1974년 9월 제 96회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같은 해 12월 위 수정안을 철회하고 1975년 4월 본래의 개정안을 리숙종위원 외 19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림축에선 민법의 전통성, 관습이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가족법개정 반대활동이 있었고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개정반대 청원을 제출, 찬반의 소용물이자 컸다.

이러한 찬반의 소용물이는 국회 원내 및 사회에 맹배하다가 1977년 정기국회에서 12월 17일 원안에서 상당 부분을 삭제한 국회법사위원회가 작성한 대안이 통과, 197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의 실질내용은 핵심을 회피한 미봉적 조치였고 구체적으로는 단위조문만에 치중하여 관련조문과의 관계적 해석에 있어 문제가 야기되는 등 성(性)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특전과 천대가 나뉘어지는 가부장제적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찬성측 운동연혁

1953-1955 : 대한부인회, 여성문제연구원, YWCA 등 11개 여성단체가 주동이 되어 황신덕, 표경조, 강화순, 이태영 등이 대표로서 당

- 시 대법원장(김병로)을 방문, 가족법 개정 건의서 제출.
- 1957 : 여성문제연구원 등 9개 여성단체 주동으로 당시 민의원의
장(이기봉)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원서 및 호소문 제출.
- 1958 : 대한부인회, 여성문제연구원 등 6개 단체 명의로 당시 이
승만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1958년 민법개정 공포, 1960년
시행)
- 1962.7 : 여성문제연구회, YWCA 등 7개단체가 주동이 되어 리숙
총, 황신덕, 표경조, 이태영 등이 대표로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
의에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 1973.4.27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 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가
족법개정촉구강연회를 개최하고 범여성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을 다짐하다.
- 1973.6.28 : 61개 여성단체(회원 1,200명)가 참가한 가운데 범여
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대회를 열고 10개 개정요강을 채택하다.
- 1973.7.10 : 촉진회(회장:리숙총, 부회장:김봉희, 김정래, 손인실, 오
춘희, 이태영, 현기순)명의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
장, 국회의원에게 건의문 제출.
- 1973.7.15 : 가족법개정요강해설 책자발간
- 1973.7.21 : 촉진회 부산지부 결성
- 1973.11.19 : 가족법개정 포스터 제작
- 1973.11.20 : 촉진회 목포지부 결성
- 1973.11.25 : "다같은 인간인데" 책자 발간

- 1973.11.30 : 가족법 수첩 발간 (1974 년도)
- 1973.6-12 : 61 개 참가단체에서 17 회 계몽강연회
- 1974.1-12 : 61 개 단체에서 300 회 강연회
- 1974.3.6 : 제 1 회 가족법개정운동 지도자훈련
- 1974.7.18 : 추진회에서 가족법개정 법안 및 이유서작성을 완료하고
여성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제출을 의회, 전달
- 1974.9.25-9.26 : 제 2 회 지도자훈련 (지방지도자)
- 1974.9.28 : 가족법개정안 (수정안) 국회에 제출
- 1974.12.2 : 가족법개정안 (수정안) 국회 원회
- 1975.4.9 : 가족법개정안 다시 제출
- 1976.12.8 :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제안자측 설명
(연사 : 김주수)
- 1977.6.1 : 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 개설
- 1977.7.7 : 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추진회 결성
- 1977.9.16 : 동성동본불혼폐지 가두 캠페인 (400 여명 서명)
- 1977.12.17 : 제 98 회 정기국회에서 가족법 일부 개정
- 1979.1.1 : 시 행
- 1982.7.20 : 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제출
- 1982.11 : YWCA, " 현행가족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팸플렛 배부
- 1983.9.28 : 제 20 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에서 가족법개정을 완결하
여 줄것을 건의

개정 반대측 활동 연혁

1974.8.25 : 전국 유림대표자대회에서 5 백만 유림총의로 가족법개정 반대결의

1974.10.5 : 34 만명의 가족법개정 반대 서명, 날인원본을 국회사무처에 제출 (유도회)

1974.10.15 : 유도회에서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건의 제출 (소개의원 : 신상우의원외 6인)

1975.11.15 :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 결성

조직 ① 회장 - 鄭周永

② 고문 (직책은 1976년 6월 당시)

金顯哲 (前 장관)

朴順天 (前 대한부인회장)

鞠默潭 (대고종대종사)

金命淵 (국회의원)

朴種和 (예술원장)

李載瑞 (前 공화당 충남도사무국장)

尹日善 (前 장관)

李丁奎 (前 성대총장)

吳宗植 (언론인)

梁俊模 (변호사)

安均燮 (前 국회의원)

洪淳良 (남양홍씨 대종회장)

趙鎭滿 (前 대법원장)

鄭求旻 (前 공화당위원장)

權重海 (前 성균관장)

李恒寧 (홍대총장)

李活 (고대 재산이사장)

李能雨 (동덕여대 이사장)

金重漢 (前 국회의원)

全禮鎔 (前 장관)

金斗憲(전대교수)	成樂緒(성균관장)
李相殷(고대교수)	金蓮洙(前 대법관)
申夷鶴(성대교수)	李丙熙(학술원장)
柳連永(서울대교수)	閔泰植(성대교수)
崔大敦(변호사)	申肅雨(前 서울부시장)
玄勝鍾(성대 총장)	金龍周(용문중고 이사장)
鄭 玢(동대교수)	郭鍾元(전대총장)
車洛勲(고대총장)	柳洪烈(성대 대학원장)
姜聲郞(前 장관)	柳忠烈(차유대총회장)
趙榮渙(前 교수)	宋漢植(통일주체대의원)
金弘壹(예비역 중장)	安浩相(前 장관)
李炳主(국회의원)	奇世勲(변호사)
李殷相(충무공 사업회장)	崔德新(종협회장)
鄭順錫(前 대검찰총장)	趙義島(사학가)
俞鎮午(前 고대총장)	高在旭(동아일보 회장)
郭義榮(前 장관)	安龍伯(前 전남교육감)
高在鎬(前 대법관, 現 변호사)	安鍾石(성균관 부관장)
金長涉(前 국회의원, 변호사)	金老洙(새창철강 사장)
朴濟鳳(박씨 대종회장)	柳正東(성대 유학대학장)
尹濟遠(前 국회부의장)	李 鎬(대한적십자총재)
李熙昇(단대 동양학연구소장)	朴一慶(명지대학장)
趙炳華(문인)	李瑄根(대한교련회장, 동대총장)

李秉喆 (성대 이사장)

金澤壽 (대한체육회장)

申東旭 (성대교수)

金觀東 (필암서원장)

郭尙勲 (前 국회의원)

鄭雲甲 (국회의원)

柳承國 (성대박물관장)

韓喆愚 (중앙고 교장)

李南淳 (성대교수)

③ 구성현황 (목표)

1. 특별시·자치도민협의회 (8개소)

2. 자군민협의회 (108개소)

3. 각읍, 면, 리, 동협의회 (1,270개소)

4. 자부녀협의회 (210개소)

5. 각향교협의회 (70개소)

6. 각유도회협의회 (75개소)

7. 각종중종파협의회 (110개소)

8. 각종교협의회 (95개소)

9.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서명 날인자 1,002명

10. 가족법개정반대서명 날인자수 약백만명

1975.12.3 : 개정반대측 국회의원 33인의 날인을 받아 국회에 청원

1977.11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대측 설명 (연사 : 기세
훈)

가족법개정 반대 국회의원 (9대)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 울 : 鄭雲甲 (신민당) 盧承煥 (신)

경 기 : 金在春 (공화당) 李珍鎔 (무소속)

강 원 : 金命潤 (신) 張承台 (공)

충 북 : 金元泰 (공) 李忠煥 (신) 李龍熙 (신) 閔稷植 (공)

 李敏雨 (신)

충 남 : 李炳圭 (공) 黃明秀 (신) 韓英洙 (신) 朴璣 (신)

 韓建洙 (신)

전 북 : 李炳玉 (공) 蔡永喆 (공) 金光洙 (무) 柳琦諄 (공)

 梁海俊 (신) 孫周恒 (무)

전 남 : 文亨泰 (공) 朴炳澤 (신) 李重載 (신)

경 북 : 權聖基 (공) 吳俊碩 (공) 權五台 (무) 朴柱炫 (무)

 黃在洪 (공) 韓柄采 (신) 金潤河 (무)

경 남 : 鄭雨湜 (공) 崔炯佑 (신) 金東英 (신) 辛相佑 (신)

 文富植 (신) 黃洛周 (신)

제 주 : 洪炳喆 (공)

가족법 개정 찬성측 입장

개정법안의 주안은 인간평등에 의거하는 여권신장과 새시대에 부응하는 가정생활의 존중을 겨냥하는 것으로 그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타고난 성별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특전과 천대가 나누어지는 현행 가족법은 「세계

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전승, 계발하고자 한다. 국가 사회의 구성책으로서의 가족제도는 가족원 상호간의 애정과 이해,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굳건히 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전승,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미래세대를 위한 창조적인 가치관을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찬성측 의견의 골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김용한(전대 교수):

가족법은 私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민법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이요, 재판규범인 이상 공평한 입장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는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고 있으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도 원래 중국의 유교적인 明律을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고려·신라시대에는 오히려 근친혼이 허용된 史實이 있으며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과 관계가 없는 한 자녀의 상속분은 균등하였던 것이다.

이런 몇가지는 미풍양속 운운하는 반대이론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법은 남성을 위한 또는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반대측은 가족법사의 세계적 조류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실태를 공정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조사월보 1974. 10월호에서 발췌)

이 태 영 (가정법률상담소장):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가족법은 그 가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문제는 가족의 불화로,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고 등으로 가정이 깨지게 될 경우이다. 그때의 심판관은 가족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가족법이며 이때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법에 대해 절대 공정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처럼 법이 앞장서서 노골적인 남녀차별을 명문화한 예는 없다. 가족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별하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고, 또한 호주와 다른 가족들을 차별하고 있다. (여성 1982.8월호에서 발췌)

양 정 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우리 주위에서 보면 세살된 아이가 호주가 되어 그 호적상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 삼십이 넘은 아직 혼인전 삼촌 (실제의 가장), 성년이 넘은 고모 등이 그 아이의 호주권에 복종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현행 호주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하고 허망

한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이는 인구정책, 가족정책을 저해시키고, 가족제도가 민주화해가는 현시점에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암적 요인이며,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을 차별하는 사상을 우리 사회의 의식 밑바닥에 유지시키려는 옛날 전제군주시대, 봉건시대의 망령으로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계도로밖에 볼 수 없다.(이대학보 82년 5월 31일자에서 발췌)

가족법개정 반대측 입장

반대측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가족제도는 남녀의 진정한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장시일에 걸쳐 연구하여 제정한 것임으로 아름다운 전통과 윤리를 살리면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전통윤리를 도외시한 것이다.

둘째, 민족의 과제인 윤리면에서 잘못 수용된 서구외세풍조에 대해 반성하고 참다운 전통윤리를 본받아 현대적 윤리관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서구의 퇴폐오염에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개정안은 한국의 아름다운 가족제도를 가속도로 파괴시킬 독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총화유신에 차질을 자아내서 국가안보가 근본으로부터 와해될 것이다.

넷째, 각 개인의 기능적 차이, 능력의 차등을 도외시하고 관념적인 남녀평등이 보호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나머지 민족관과 주체의식을 상실하면서 서구의 이기주의 독소에 추종하면서 개정하려 함

은 부당하다.

또한 반대측 의견의 골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유도회 총본부 :

(전략)

가족법 개정안은 한 가정을 이해타산의 냉혹한 절창으로 바꾸고 친족관념을 금수로 혼돈하려는 골자로 되어있음을 보고 이를 끝까지 반대한다. 「역사의 전통」 「민족의 얼」마저 아랑곳없이 「남녀평등」 「여성의 자유」 「여권신장」을 구실로 가족법 개정의 여념이 없다고 한다면 「수직적」인 동양인의 가족주의적 윤리관의 근본이념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평등에도 차별이 있고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가……

김 두 현 (윤리학자) :

(전략)

만약 가부장제로써 전래한 관습이나, 제도상으로 여권을 무시한 점은 어디까지나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호주 내지 세대주는 자손 즉 부계의 상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테면 장자孫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孫이나 여자가 상속해도 좋다고 한다면 상관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순위를 그렇게 하자는 것뿐이다.

그 전통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974.9월호 월간중앙 “이것이 궁금하다” 「호주제도 정말 필요없나」에서)

이 병 용 (변호사) :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건 비교할 필요가 없다. 호주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남자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남녀불평등이라고 지적된 사항들은 여자를 낮게 보기 위해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규제한 것이라기 보다 부제가족제도 (Patriarchal Family System) 에서 우러나온 제도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대화 1973.9월호 “가족법개정은 과연 필요한가”에서)

기 세 훈 (변호사) :

생리적 차이, 경제적 활동력의 차이로 남자중심의 사회가 된지 수천년이 경과되었으니 이는 생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남자가 부담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구미각국에서도 여자가 혼인하면 자기姓을 버리고 남편의姓을 따라가면서 까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호주는 조부, 조모, 부모, 자기의 순으로 제승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여성은 혼인함과 동시에 남편의姓을 따라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광장 1974.9월호 “현행가족법과 상속법중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전남 유도회 지부 :

“女家長制 絶대로 용납할 수 없다”

호주제도 대신 가장제도를 신설하여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부당하다.

「김씨의 남자집에 박씨의 여자가 들어와 가계를 이어받을 수 없
다」

이상에서 개정찬·반측 입장과 그 활동상황을 살펴보았다. 개정
반대측은 74년, 75년 양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이고
75년 한해에 7만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지만, 개정운동측은 10
여년 가까이 활동이 지속되었음에도 유림측보다 더 많은 수의 서
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반대측의 조직적인 면모
를 찾아볼 수 있겠다. 가족법개정에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벌
인 바 있는 유도회총본부, 여성유림회, 성균관을 유림전람 등의 유
림자료에 의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도회총본부(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는 1945년 10월 전
국유림 2,500여명이 공부자(孔夫子)의 도덕을 근간으로 국민의 윤
리도의 정신을 함양케 하고 수제치평의 大道를 천하에 선포하여 사
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이다. 주요사업은 ①성균관
대학교 및 지방향교와 유림기관의 발전육성 ②경전 및 학술의 연
구발표 ③정치·경제의 연구발표 ④교화(教化)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며, 산하에 261개 지부(서울(17) 부산(8) 대구(7) 인천(2)

경기(27) 강원(15) 충북(18) 충남(39) 전북(26) 전남(30)
경북(41) 경남(28) 제주(3)가 있다. 협력단체로 전국서원,
전국각종회가 있고 산하단체로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림회가 있다.

유도회의 산하단체인 여성유림회(회장:호영희)는孝를 중심으로
한 가정운리를 확립하고, 전통적 기반위에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가정에서는 현명한 주부로서, 사회에서는 건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1975년 5월 23일 창립된 곳이다. 이
러한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및 계몽, 노인학교 설치
와 경노당 운영, 신부학교를 개설했으며 기타 교양강좌(서도, 명심
보감, 소학, 논어, 대학, 주역)개최, 호부·열녀·효녀를 표창하고 있
다. 지난 80년 11월 개설된 신부학교는 60명의 여성(미혼,신
혼)을 대상으로 3개월간에 걸쳐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한다.

강좌내용: I. 교양강좌(고전강의, 전통예절, 전통여성교육, 규합<閨閤>
총서)

II. 서예(한문, 한글<궁체>, 문안편지, 묵화)

III. 특강(관혼상제에 따른 범절, 茶道, 전학)

IV. 바느질(한복, 수예<골무, 수저집, 베갯모, 상보, 폐백보>)

V. 매듭(노리개, 목걸이, 벽걸이, 발걸이)

VI. 요리(전통요리<이론, 실습> 일상요리(장담그기, 김치담그기,

각종찌개> 상차리기<둘상, 잔치상, 폐백상, 회갑상, 제사상>)

강좌내용을 보면 건전한 사회인의 능력배양보다는 현명한 주부
(유교정신에 입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현재(1983.11)

11 기생을 배출하였다.

여성유림회를 포함한 유도회총본부와 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성균관(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소재)은 성묘를 건봉(虔奉)하고 교화사업에 주력하고 남한의 231개소 향교를 관리하고 있다. (향교: 서울(1) 부산(1) 대구(2) 인천(2) 경기(27) 강원(15) 충북(18) 충남(38) 전북(26) 전남(29) 경북(41) 경남(28) 제주(3))

성균관이란 이름은 「掌成均之法典 以治建國之學政」이라는 周禮의 「成均」에서 연원된 것으로 서기 1304년(고려 충렬왕 34년) 6월 고려의 수도 개경에 최초로 건립되었고 생진과에 합격한 진사와 생원 등을 모아 학문과 법도를 전수시킨 곳이었다.

조선왕조가 도성을 한양으로 옮긴 후 1398년(태조 7년)에 고려조의 성균관제도를 계승하여 현위치인 명륜동에 건립하였고 (서기 1400년<정종 2년>에 소실되었으나 곧 재건되었고 선조 25년 또 소실된것을 년차적으로 중건하여 현재에 이름) 지방에는 향교 360개소를 중설하였다. 조선조에서는 유학을 국시로 정하고 생원진사과에 합격한 인사를 3년에 1차씩 선발하여 함숙시켜 연구케하였으나 정조이후에는 생원, 진사이외에 학술이 우수한 일반인사도 선발하여 공부하게 한 곳이다. 현재는 문묘향사(文廟享祀), 성균관 및 유도회의 유지관리, 지방향교의 통할관리, 학술 및 문예의 연구보급, 교화 및 사회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성균관의 고대교육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적 교육기관으로 성균관대학교

가 있다. 그러나 1963년부터 재단법인 성균관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는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한편 李載瑞성균관장이 유도회총본부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림회보(월간)를 발간하여 한국의 중요사상 보급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유도회나 성균관이 추구하는 기본사상은 유학으로서 조선조에는 이 유교가 국시로 되어 유교의 가치관, 윤리관이 일반인을 지배하였고 주자가배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조선조 유교는 여성에 대해 “알게 할 것이 없고 다만 좃게 할 것”이라는 기본사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주역」에서는 음·양을 근간으로 「부인의 생명은 오로지 복종에 있고 반대로 또 부인에 복종하는 것은 흉한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관계도 평등, 우애의 인간관계로 성립,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복종의 종적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

「아들을 낳으면 牀위에 눕히며, 좋은 옷을 입히고, 玉을 갖고 놀게 하는 반면에 딸을 낳으면 바닥에 눕히며 기저귀만을 채워,기와를 갖고 놀게 한다」

(乃生男子 載寢之牀 載衣之裳 載弄之璋…

乃生女子 載寢之地 載衣之綌 載弄之瓦…」

— 詩經 小雅 —

여성의 최대 임무는 자식, 특히 아들을 낳아 기르는 일이었고 여

성의 거처는 가정에 국한되어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며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었다.

이와같은 조선조 유교의 남존여비사상은 한국여성의 생애를 지배한 근본이념이 되었으며 이러한 가부장제 사고방식은 현재의 유럽에게도 존속되어 가족법개정 반대전의문에 「평등에도 차별이 있고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족법개정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가족법개정이 여성운동에 앞서 인권운동이며 민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남녀불평등적 요소의 제거가 법개정의 목표이고 보면 결국 가족법개정을 통한 인권운동, 민주운동은 본질적으로 여성운동 그것일 수 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가족법개정 문제는 필연적으로 「여성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종래에 볼 수 있었던 어떠한 법개정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사회적 관심은 비등했던 것이다. 결국 직접적 피해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주로 대도시의 지식층과 젊은 층이 헌법정신, 민주주의, 합리주의, 근대입법정신, 세계주세의 각도에서 찬성편에 섰고 노인층과 지방 유림등이 전통성, 미풍양속, 도덕론, 비합리성을 특성으로 하는 “남녀차등당연론” “미풍양속론”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편에 섰다.

개정된 가족법

국회에 제출된지 2년반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어 오던 가족법개정안이 1977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상당부분을 삭제하고 국회 법사위원회가 새로 작성한 대안(조병완위원 담당)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① 1975년 11월 14일 리숙총의원의 19인이 제안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은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동성혼등의 금지범위를 축소하며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한 친족·상속 전반에 대대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 것임, ②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래의 윤리관과 가족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는 개정안 그대로 채택할 수 없어 이를 폐안하고, ③ 이 개정안중 여권의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해당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친족·상속법은 본래 선도적 성격의 법률이 아니고 오히려 후진성을 그 특색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는 동법의 개정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본개정안에 내포되어 있음」이라고 결론지은 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상속

상속순위는 종래와 같이 그대로 두고 다만 상속분에 있어 부분적인 개정을 했다. 즉 장남(호주상속자)은 1.5, 차남과 출가하

지 않은 딸은 똑같이 1, 출가한 딸은 차남의 0.25, 아내는 장남과 같이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아내와 출가전의 딸의 상속분은 많이 증가하였다. (종전에는 0.5)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전재산을 단독상속하고, 아내는 남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데 이 경우 다만 아내의 상속분은 시부모의 몫에 5할을 가산하도록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시부모와 균분상속)

(2) 귀속불분명한 재산

혼인중에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인정하게 되었다.

(3) 협의이혼제도 보완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이혼신고를 하도록 되었다. (종전에는 본적지에 신고하면 가능)

(4) 친권행사에 관하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 의견에 따르고 부모의 어느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5) 유류분제도 신설

유류분제도를 신설하고 그 상속분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frac{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frac{1}{3}$ 로 정하였다. 이때 법정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재산과 사망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한 후 계상한다.

(6) 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을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는 것을 미성년자에 한하여 동의를 얻도록 함.

(7)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하도록 의제(擬制)규정을 신설함.

(8) 혼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신 이미 혼인한 동성동본 부부와 자녀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한시법(限時法)으로 1977년 12월 17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기간동안 동성동본혼 부부의 혼인신고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받게 되는데 단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되지 않은 조항

속진회가 제출한 원안중에서 부분적으로도 개정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찬성측 이유와 반대측 이유의 골자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친족범위

현행법	개정안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1. 부계 모계 혈족은 4촌이내로 한다.

현행법	개정안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夫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 4. 夫의 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2. 인척은 3촌이내로 한다. 3. 배우자

1. 개정반대이유 ①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나 처가는 이성(異性)인데 친족범위가 같을 수 없다.

② 친족범위를 축소할 실리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친족허용론의 결과를 가져온다.

2. 개정찬성이유 ① 부계, 모계간 및 남편, 아내간에 심한 성차별을 배격할 뿐 아니라 현실성과도 적응시키고자 한다.

2.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현행법	개정안
제 809 조 (동성 혼동의 금지) 1.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男系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 809 조 (근친혼의 금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① 8촌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이내의 모계혈족 ③ 직계인척 2. 직계인척이었거나 또는 양친족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않는다.

1. 반대이유 ① 동성동본의 혈족간의 결혼은 성윤리상 절대 불가하다.
 ② 우 생학적으로도 근친혼은 유해한 반면 친족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2. 찬성이유 ① 불혼의 원칙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없이 헌법상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비판은 차치하고 동성동본불혼은 父의 혈액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비생물학적 남계혈통 중시 규정이다.
 ② 동성동본 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도 이 원칙은 폐지되고 있다.
 ③ 모제와 부제의 근친혼수를 달리한 것은 근친혼 불혼에 대한 우리나라 감정에 비추어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8촌으로 하고 보니 모제는 종래 행해지던 4촌 금혼제의 관습보다 더 개악(改惡)이 되게 되므로 모제 4촌은 그대로 둔 것이다.

3. 부부동거장소와 부부의 입적규정 삭제 및 입부혼계도의 폐지

현행법	개정안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寬容하여야 한다.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 1. 左 同

현행법	개정안
2. 부부의 동거는 夫의 주소나居所(居所)에서 한다. 그러나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처의 주소나居所에서 한다.	2. 삭제
3.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상속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할수 있다.	3. 삭제
4.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	4. 삭제

1. 반대이유 :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주며 실효성이 없을 것임.
2. 찬성이유 : 남녀평등원리에 어긋남.

4.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현행법	개정안
제 839 조 (준용규정)	제 839 조 (준용규정) 左同 제 839 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전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반대이유: 이혼을 장려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재산을 탈내서 이혼하기 쉽고, 불로소득하기 위하여 이혼하고, 또 혼인하고, 또 살다가 이혼구실을 찾아 이혼하는 악습이 성행할 것이다.
2. 찬성이유: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등 재산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처의 경우 이혼의 자유란 그림의 떡이고, 실제로는 남자전제(專制)이

혼 또는 처의 추방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5. 적모서자관계와 제모자관계의 시정

현행법	개정안
제 773 조 (제모자관계로 인한 친제와 존수) 전처의 출생자와 제모 및 그 혈 족, 인척사이의 친제와 존수는 출 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773 조 삭 제
제 774 조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 제, 존수) 혼인외의 출생자와 父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제와 존수 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774 조 삭 제
제 775 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1. 인척관계와 前 2 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 하여 종료한다. 2. 夫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 에 복적하거나 재혼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제 775 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1.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 료한다. 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 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현행법	개정안
제 912 조 (제모와 그 친권행사) 자기의 출생 아년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母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12 조 삭제

1. 반대이유 : 현 칙제도 불인정下에서 서자관계는 논할 필요가 없으며, 제모와 전처의 출생자중에는 현모, 효자가 배출된 전례에서 인자후덕한 제모상을 흐리게해서는 안된다.

2. 찬성이유 : ① 제모자, 적모서자 관계는 당사자 (처와 자식) 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본처와 서자사이에는 법정친자관계 (적모서자관계) 를 인정하고 후처는 혼인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처의 소생 자녀와의 사이에 제모자관계가 성립된다. 반면에 적부서자 관계와 계부자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동일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법적 부자관계가 없게 된다.

6. 입양제도의 시정

현행법	개정안
제 867 조 (사후양자)	제 867 조 삭제
제 868 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	제 868 조 삭제

현행법	개정안
제 869 조 (15 세미만의 입양승락) 양자가 된 자가 15 세미만인 때에는 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이에 가름하여 입양의 승락을 한다. 그러나 적모, 제모 또는 후견인이 승락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69 조 (15 세미만의 입양승락) 양자가 된 자가 15 세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에 가름하여 입양의 승락을 한다.
제 870 조 (입양의 동의) 2 항 제 867 조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	제 870 조 2 항 전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 (數人) 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 871 조 (미성년자의 입양의 동의)	제 871 조 左 同 제 871 조의 2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현행법	개정안
제 872 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72 조 (") " "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74 조 (부부의 공동입양) 1.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2.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夫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 874 조 (") 1.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75 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제 875 조 삭 제
제 876 조 (서양자)	제 876 조 삭 제
제 877 조 2 항, 양자로써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자는 양가의 호주 상속을 할 수 없다.	제 877 조 2 항 삭 제
제 879 조 (사후양자의 신고)	제 879 조 삭 제
제 880 조 (유전에 의한 양자)	제 880 조 삭 제

현행법	개정안
제 882 조의 2	제 882 조의 2 (양자의 입적성과 분) 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부모의 호적에 입 적한다.

a. 반대이유 : 가정일에 가급적이면 법원의 개입을 배제해야 하고 입양의 주목적이 가계계승이므로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할 수 없으며 또 양자는 마땅히 양부의 성을 따라야 함.

b. 찬성이유 : 남녀차별적 요소 배제

7. 호주제도의 폐지

현행법	개정안
제 778 조 (호주의 정의)	제 778 조~제 779 조까지 삭제
제 980 조 (호주상속개시의 원인)	제 980 조~제 996 조까지 삭제
제 996 조 (분묘등의 제송) 분묘에 속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 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족 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 상속 인이 이를 제송한다.	제 996 조를 삭제하고 제 1008 조의 2 (분묘등의 제송) " " " "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이를 제송한다.
제 991 조 (호주상속권의 포기금지)	제 991 조 삭제

1. 반대이유: ① 한 가정의 중심점이 되는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미덕이다.

① 호주는 제사의 상속이라는 조상숭배사상과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기때문에 출가한 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다.

2. 찬성이유: ① 호주제도는 관념적인 제도로 호주에게 부여된 호주권은 오늘날에 있어 사실상 공허한 것일 뿐이다.

다만 남계혈통을 대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규범화하여 남자와 여자, 가장과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상하, 지배 복종의 관계로 묶어놓는 가치관의 유지를 꾀할 뿐이다.

② 소위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현행 세대주(가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상과 같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가족법은 민사법학회, YWCA,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최근까지도 연구활동과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므로 YWCA에서 벌이고 있는 개정항목만을 소개해 본다.

- ① 호주제도 폐지
- ② 친족범위 조정
- ③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 ④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⑤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 ⑥ 첩의 자녀를 입적함에 있어 본처의 동의없이 남편 마음대로 입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가족법은 고쳐져야 한다.
- ⑦ 적모, 서자관계, 계모자 관계 시정
- ⑧ 재산상속제도 시정
- ⑨ 처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공동의 재산이므로 상속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⑩ 양자는 입양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고쳐져야 한다.

참 고 자 료

- 가족법개정저지법국민협의회(1976), 「가족법개정저지법국민협의회 결성 및 율리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인사요지」
- _____, 「민법중 개정법률안(가족법)에 대한 반대이유」
- _____, 「조속한 제기를 촉구하는 건의문」
- 박동현(1981),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사법행정」 1981.12
- 기세훈(1974), “현행가족법과 상속법중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광장」 1974.9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편)(197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7 호, 제 28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4.9
- 김두현(1974), “이것이 궁금하다 「호주제도 정말 필요없나」,” 「월간중앙」 1974.9
- 김영우(1976), “가족법개정안을 보고,” 「법률공론」 1976.2
- 김용한(1974), “가족법개정에 대하여,” 「입법조사월보」 1974.10
- _____(1979), “민법일부개정의 배경과 문제점上,” 「법조」 1979.9
- _____(1980), “ ” 下, ” 「법조」 1980.1
- _____(1982), “가족법개정의 이념과 방향上,” 「사법행정」 1982.4
- _____, “ ” 下, ” 「사법행정」 1982.5
- 김주수(1973), 「친족상속법」, 법문사
- 배경숙(1974), 「한국여성의 사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대 박사학위논문

- 법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편)(1973), 「가족법개정요강 해설」
 _____(1974), 「민법제 4 편친족, 민법제 5 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
 _____, 「다같은 인간인데」
 BPW서울클럽(편)(1977), 「가족법개정안에 관한 자료,」 「여성문
 제연구자료 1 집」
 성균관(1982), 「성균관약사」
 양정자(1982), 「우리나라 호주제도에 대한 일고찰,」 이대학보
 1982.5.31.
 _____, 「가족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사법행정」 1982.2
 유도회총본부(1974),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건의」
 _____(1983), 「유림편람」
 이병용(1973), 「가족법개정은 과연 필요한가,」 「대화」 1973.9
 이은영(1979), 「여성운동과 법」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
 과 비평사」
 이태영(1982), 「현행가족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여성」 1982.8
 신인령(1979),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여성학」, 이대출판부
 조선일보 1974.7.26일자
 조훈파(1975), 「법개정안이 능사인가,」 「세대」 1975.8
 차명희(1978), 「가족법개정의 내용,」 한국복음신보 1978.1.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82),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1982.7.20
 한국여성유림회, 「한국여성유림회 요람」

